

캄보디아 기업법의 회사 설립 규정

I. 서설

GMS(Greater Mekong Subregion)로 불리는 메콩강 유역개발의 주요 국가로서, 캄보디아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0.1%의 경제성장에 머물기도 하였으나,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 5.5%를 기록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캄보디아의 이러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2011년 경제성장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2010년 투자액을 전년대비 856%로 증가시키며, 제1위의 투자국이 되었다. 2005년부터 체결되기 시작하여 2009년 체결이 마무리된 한-아세안 FTA 및 투자협정의 효과로, 교역 및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사회주의 국가였으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일대 개혁을 시도한 소위 '체제이행국가'이다. 캄보디아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복수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캄보디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권 분립이 인정되고 있으며(캄보디아 헌법 제51조), 입법부는 국회와 상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캄보디아 헌법 제99조 이하). 캄보디아는 이웃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사회구조에 머물러 있지만, 경제적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 투자 및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업 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캄보디아는 이미 2005년 시장기구의 작용에 필요한 새로운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상업기업에 관한 법률(Law On Commercial Enterprises)」(이하, '캄보디아기업법'이라고 함)을 제정한 바 있다.

II. 캄보디아기업법 개관

1. 캄보디아 법체계와 기업법의 제정

캄보디아의 법체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캄보디아 법체계는 아시아 관습법과 프랑스 보호정치 기간 동안 소개되었던 프랑스 시민법 전통, 1980년대 베트남 등으로부터 전래된 공산주의 체제, 1990년대 초반 유엔임시통치기구(UNTAC)의 활동, 그리고 1993년에 채택된 새로운 캄보디아 헌법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어서 캄보디아 제정법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지위로 두고, 조약과 법률 아래에 ‘령’과 ‘규칙’ 등이 하위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는 1993년 새로운 헌법의 공포와 함께 ‘캄보디아 왕국’을 수립하고 입헌군주국으로 복귀했다. 캄보디아는 1990년대 초부터 이웃국가인 라오스, 베트남과 함께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사적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면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캄보디아 헌법 제56조는 캄보디아가 시장경제를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외국인 투자법을 비롯한 경제발전을 위한 규범이 마련되었다. 또한 캄보디아는 2004년 WTO 가입을 계기로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 및 시장경제 유지에 적합한 법규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기업법제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국회는 2005년 4월 「캄보디아 기업법(Law on Commercial Enterprises)」을 마련하여 같은 해 9월에 시행하였다. 캄보디아 기업법은 이미 1995년에 제정된 「상업규칙 및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에 기초를 두고 있다. 캄보디아 기업법은 기업활동 및 캄보디아 내에서의 사업을 실행하는 기업가들을 규율하는 법으로써,¹⁾ 부분적으로는 대륙법과 영미법 전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캐나다 기업법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과 같은 영어권 국가들의 기업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된다.

2. 조항의 구성

캄보디아 기업법은 총8편 30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범위, 정의, 등기대리인과 등기사무소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일반조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합원간의 관계, 조합과 제3자간의 관계, 조합원의 책



1) 현재 캄보디아 기업관계법에는 2005년 캄보디아기업법(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이외에도 Commercial Code (1950),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s (1995&1999), Law on Management of Quality and Safety of Products and Services (2000), Law concerning Marks, Trade Name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2002),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06), Law on Insolvency (2007), Law on Secured Transactions (2007) 등이 있다.

임,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사적유한회사와 공개유한회사의 설립과 지배구조,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제4편에서는 외국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

편에서는 대표소송, 제6편에서는 위법행위, 벌칙, 구제수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제7편에서는 과도기적 규정을, 제8편에서는 최종 규정을 두고 있다.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제1조~제7조)

제2편 일반조합기업(제8조~제84조)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조합기업의 설립(제8조~제15조)

제2절 조합원간의 관계(제16조~제39조)

제3절 일반조합기업과 제3자간의 관계(제40조~제47조)

제4절 일반조합원이 되는 것이 중지되는 경우(제48조~제52조)

제5절 일반조합의 해산과 청산(제53조~제63조)

제2장 유한책임조합기업(제64조~제84조)

제3편 사적유한회사와 공개유한회사(제85조~제269조)

제1장 총칙(제85조~제90조)

제2장 설립

제1절 유한회사의 설립(제91조~제98조)

제2절 회사의 능력과 권한(제99조~제106조)

제3절 등기사무소, 장부 및 대장(제107조~제115조)

제4절 이사와 임원(제116조~제142조)

제5절 지분(주식)과 배당금(제143조~제160조)

제6절 증권증명서, 등기 및 양도(제161조~제198조)

제7절 재산관리인과 재산관리지배인(제199조~제204조)

제8절 사원(주주)(제205조~제223조)

제9절 재무공개(제224~제234조)

제10절 정관의 수정(제235조~제240조)

제11절 합병(제241조~250조)

제12절 해산과 청산(제251조~제258조)

제13절 법인국장(제259조~제269조)

제4편 외국기업(제270조~제286조)

(총칙: 제270조~제273조)

제1절 대표사무소(제274조~제277조)

제2절 지사(제278조~제282조)

제3절 자회사(제283~제286조)

제5편 대표소송(제287조~제289조)

제6편 위법행위, 벌칙, 구제수단(제290조~제299조)

제7편 과도기적 규정(제300조~제302조)

제8편 최종 규정(제303조~제304조)

3. 기업법상 기업의 종류

캄보디아 기업법은 캄보디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캄보디아 기업법상 인정되는 기업의 종류로는 일반조합, 유한책임조합, 사적유한회사, 공개유한회사가 있다(제1조).

캄보디아 기업법상 조합은 일반조합과 유한책임조합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s)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재산, 지식 또는 활동을 결합하는 2인 이상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이루어진 기업을 말한다(제8조).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s)이란, 운영을 인가받은 1인 이상의 사원과 자본출자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이루어진 기업을 말한다(제64조).

캄보디아 기업법상 조합은 우리 상법의 합명·합자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 우리 상법상 합명·합자의 설립절차는 아주 간단하여 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한다(대한민국 상법 제172조, 178조). 합명·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먼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다. 출자의 이행이 회사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발기인이 따로 없고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이 설립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기업법상 조합

도 일반조합과 유한책임조합 모두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상업규칙 및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제12조).

캄보디아 기업법상 회사는 사적유한회사와 공개유한회사로 구분된다. 사적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란, 사원의 수가 2~30명으로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주식을 일반에 공모할 수 없고 다른 주주, 가족, 회사의 임원 등에 사모 형식으로 발행되는 유한회사의 한 형태를 말한다. 사원의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제86조). 사적유한회사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에 가까우며, 소규모·폐쇄적 형태의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사적유한회사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실질적 주인인 대주주가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기보다는 소규모, 폐쇄적인 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개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란, 기업공개로 전제로 하는 유한회사의 한 형태를 말한다(제89조).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고, 주식공모가 가능하다는 점이 사적유한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유사하며, 기업공개를 전제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최근 설립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상장회사의 기본적인 회사형태가 될 것이다.

이 밖에 캄보디아 기업법은 외국기업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270조~제286조). 이 법에 따른 외국기업(A foreign business)이란, 영업소

가 속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캄보디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제87조). 캄보디아 기업법상 외국기업은 상업 대표사무소 내지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제274조). 외국기업은 외국인 내지 외국법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국내회사와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용역을 수행할 수 있고 제조, 가공 및 건설에 종사할 수 있다(제278조).

Ⅲ. 기업법상 회사의 설립

1. 설립의 주체

캄보디아 기업법상 기업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 절차가 간단한 조합보다는 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회사에 집중될 것이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사적유한회사나 공개유한회사 모두 발기인(initial directors)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발기인 수에 있어서, 사적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2~3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인 사적 유한회사도 가능하다. 공개유한회사의 경우는 1인 이상이라면 발기인의 수에 제한이 없다(제86조). 발기인의 직무권한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첫 창립(주주)총회가 개최될 때까지이다(제116조).

현재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수는 1인 이상이라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는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의 입법추세에 따라 그 요건을 완화하여 1인 이상으로 한 것이다. 유한회사에 관하여도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50명 이하의 제한을 두던 상법 제545조를 폐지하는 등 설립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들을 철폐하였다.

2. 설립의 절차

1) 상호의 선정

캄보디아 기업법상 회사의 설립절차 중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호를 선정하는 것이다. 회사의 상호는 ‘크메르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한 크메르어 상호는 맨 위에 표시되고 다른 언어의 명칭보다도 커야 한다. 회사는 모든 날인, 회사편지지, 공개목적용 위해 사용되는 양식과 서류, 그리고 캄보디아 영토 내의 육해공에 전시되는 광고물에 크메르 상호를 표시한다. 다만 캄보디아 밖에서는 다른 언어로 명칭을 고안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5조). 상호선정에 있어서, 사적 유한회사는 상호 끝에 “사적 유한회사” 또는 적절한 약어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개유한회사는 상호 끝에 “공개 유한회사” 또는 적절한 약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 법인국장(Director of Companies)은 회사에 의해 제안된 상호를 조사하여야 하며, 상호가 기존에 등록된 상호와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비속적·비방적이어서 사용하기 부적절

한 경우에는 해당 상호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와 관련하여 상무부 법인국장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최종결정이다(제92조).

한국은 2010년 3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을 통해 유사상호금지 제도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상호도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대한민국 상업등기법 제30조). 이러한 상업등기법의 개선으로 상호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신속한 창업절차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여 예측가능성과 등기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 선정에 관한 캄보디아 기업법의 규정들은 유사상호 등기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한 시간의 지연 및 추가 상호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회사설립에 걸림돌이 되며,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설립절차의 간소화와 등기업무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유사상호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책임추궁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정관의 작성 및 제출

캄보디아의 회사는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상무부 법인국장에게 정관을 신고함으로써 설립된다(제91조).

영미법에서는 정관을 기본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과 부속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으로 구별하고, 기본정관은 상호·설

립목적·자본·발기인 등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수정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다. 반면에 부속정관은 총회·이사회 의 소집·이익배당 등 주로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수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 결의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은 이러한 구별이 없으므로, 모든 정관기재사항이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우리 상법상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다(대한민국 상법 제292조).

캄보디아 기업법은 영미법과 같이 정관을 기본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부속정관(Bylaws)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캄보디아 내에 있는 회사의 등기사무소, 회사의 목적과 사업상 제한규정, 국가통화로 기입되는 수권자본, 주식의 종류와 발행수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 회사가 1개 이상의 주식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은 주식최대수, 액면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각 종류주식과 관련된 권리, 특권, 제한, 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종류주식이 연속으로 발행되는 경우, 정관은 이사에게 각각의 주식수를 고정하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각 종류주식과 관련된 권리, 특권, 제한,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밖에 주식의 발행, 양도 또는 소유

가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효력과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며, 각 사원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93조).

기본정관에는 필요한 규정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제94조). 정관에는 모든 발기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제95조), 정관을 제출할 때에는 설립과 관련된 기타 등록서류들도 함께 상무부 법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6조).

유한회사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써 회사정관을 수정할 수 있는데(제235조, 제236조), 정관의 수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주주에 의해 승인된 수정사항에 날짜를 기재하고 이사회 의장 또는 의장에 의해 승인된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정을 승인하는 특별결의와 함께 모든 수정내용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상무부에 제출되어야 한다(제239조). 상무부의 법인국장은 수정된 정관을 수령한 즉시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수정증명서에 나타난 날짜로부터 수정의 효력이 발생한다(제240조).

그러나 실무상 사적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사용하는 표준정관만이 인정된다. 또한 주주, 회사의 주소, 의사·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공개유한회사의 경우 새로이 정관을 만들어 캄보디아 상무부의 승인을 얻으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립증명서 발급과 법인격의 취득

캄보디아 기업법상 회사가 기본정관을 제출하게 되면, 상무부 법인국장은 이를 접수하고,

등록비를 수령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설립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제97조). 설립증명서가 발급되며, 회사는 설립증명서에 나타난 일자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제98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립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과 동시에 설립에 관한 발기인 등의 책임을 가중한 엄격준칙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보험·신탁과 같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영업면허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법인격 취득을 위한 설립면허와 다르지만 실제로는 면허주의 또는 허가주의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면허주의는 행정관청이 설립의 필요성 및 내용을 심사하므로 번잡할 뿐 아니라 심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부정한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으며,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단점이 있다. 회사설립에 관하여, 캄보디아는 허가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대기업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의 이웃국가인 베트남의 경우도 회사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여 회사로 성립된다(대한민국 상법 제172조). 회사의 실체를 어느 단계에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가 있는데, 대륙법계의 경우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점은 설립등기부터이고, 법인격 취득조건으로 회사의 인적 기초와 물적 기초 및 기관 구성이 모두 종료될 것

을 요구하는 반면, 영미법계의 경우 법인격 취득 시점은 정관 등록부터이며, 법인격 취득 조건으로 회사의 인적 기초와 물적 기초 및 기관 구성이 종료될 필요가 없으며, 법인격 취득 후 조직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캄보디아는 회사설립에 있어서 법인 취득시기와 관련해 영미법 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법인인감과 창립총회

캄보디아에서는 법인인감제도(Corporate Seal)가 존재하며, 실무상 법인설립시 설립신청서류에 법인인감을 제작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있고, 거래의 실무에서도 법인 명의의 서류, 계약 등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법인인감, 사용인감 증명 등 법인인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캄보디아 기업법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대리인 등은 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 등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여 법인인감의 날인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제115조).

발기인은 회사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창립총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최소 20일 전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자, 장소, 안건 등이 표시하여야 한다(제117조). 창립총회는 회사설립의 종결단계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의 회사의 의결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소집절차, 의결권, 결의의 하자, 기타 창립총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09조). 우리 상법상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필요 없으며,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그러나 모집설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창립총회가 있어야 하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발기인이 소집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08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선임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12조).

3. 설립자의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은 매우 복잡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설립절차상 과오나 부정이 개입되기 쉽고, 사기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상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기인 및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321조, 323조, 326조 등). 이에 따르면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사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이사 및 감사가 설립절차에 관한 조사·보고의무를 게을리했을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캄보디아 기업법상 회사 설립자에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회사 설립 전 이루어진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회사를 위하여, 또는 회사 명의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계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구속되며 그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회사가 설립된 후 합당한 시간 내에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또는 회사 명의로 회사가 존재하기 전에 체결된 서면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 회사를 위해서 또는 회사 명의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으면, 계약의 구속이 정지되거나 계약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제139조).

IV. 결 어

캄보디아와 같은 과도기 경제체제에서는 기업설립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모두 방해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업법의 개혁과제는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저비용의 회사운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기업법 제259조에서는 캄보디아 상무부 내에 상업등기부서(the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를 두도록 하여 회사등기를 포함한 회사설립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기업법은 기본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에 대하여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있고(제93조), 정관 제출 후 설립증명서를 발급받으면(제97조), 회사는 설립증명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98조). 그러나 여전히 회사설립을 위하여 등기주의가 아닌 허가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사기업부문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에 현지투자하거나 현지 법인화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기업법의 내용들과 비교하여 캄보디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내용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이해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내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캄보디아 법의 현실적 문제들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 준비 또는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준 표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선임연구원)